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3961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주식회사 태영씨앤디
	3. B
	4. C
	5. D
	6. E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피고가 2015. 7.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6. 구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던 F지구 내 부산 강서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호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순번	원고	취득 부동산	취득액(원)
1	A	104동 110호	208,000,000
2	주식회사 태영씨앤디	107동 105호	182,301,098
		116동 110호	182,301,098
3	B	108동 104호	418,000,000
4	C	128동 110호	223,000,000
5	D	129동 113호	143,954,000
		129동 114호	223,000,000
6	E	130동 101호	278,000,000

나. 원고 주식회사 태영씨앤디(이하 '원고 태영씨앤디'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 태영씨앤디는 2012. 4. 25. 피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3. 4.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신고를 한 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라. 원고들은 2015. 5.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면제요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부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위 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물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3) 설령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용으로 임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시에 여러 상가부동산이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등 임대시장의 여건으로 인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태영씨앤디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고 납기일 내에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태영씨앤디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구 행정안전부는 2011. 2. 8. 아래 [지침1]과 같은 내용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부산광역시는 같은 날 위 운영지침을 피고 등에게 통보한 사실, 이후 구 행정안전부는 2013. 3. 21. 아래 [지침2]와 같은 내용으로 위 운영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침을 다시 시달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13. 3. 25. 이를 피고 등에게 통보한 사실은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지침1]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

◦ **쟁점사항** 구 지방세법에서는 감면규정에 개별적으로 추징요건이 단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분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를 준용하여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및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토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해당된다 할 것임

[지침2] 구 행정안전부의 2013. 3. 21.자 운영지침

◦ **적용범위 관련 우리부 운영지침 내용** 2011. 2. 8. 신설 추징규정의 운영지침 통보 : 감면조문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직접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신설된 추징규정(제94조)을 적용하되, 감면조문에 '직접사용'이 없는 경우 신설된 추징규정 적용 제외 ◦ **지침내용의 문제점 및 지침내용 조정** 문제점 : 운영지침에서 적용범위를 '직접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반해 적용대상 누락 발생 변경내용 : '직접사용'이 없더라도 종전에 개별추징규정이 있었던 조문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조문은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으로 지침 조정

다) 한편,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관련법령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5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1. 1. 1. 분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으로 변경되었는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비록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구 지방세법상 개별추징 규정을 일반화한 규정으로, 2011. 1. 1. 분법되기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개별추징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은 그 적용대상을 '직접 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구 행정안전부는 2013. 3. 21.자 운영지침을 통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그 해석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변경된 해석이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과 2013. 3. 21.자 운영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위 2011. 2. 8.자 운영지침이 되풀이 시행되는 등 실제 행정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처럼,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취득세 추징요건은 원고들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조합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추징요건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시장의 여건이라는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2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끝>